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정의 규정 신설 등 >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86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및 제공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제23호 신설) ..	3
2. 언론등 범위 확대 및 정정보도청구 대상 추가 등(안 제5조 등)	8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통한 게시자 정보 제공 청구 근거 신설 등(안 제18조 등)	13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문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11.

다.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등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조정신청 시에도 온라인 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또한 언론의 보도, 게시, 매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보’와 달리 인격권 등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조정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이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및 제18조 등).

Ⅲ. 검토의견

1.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및 제공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22호 및 제23호 신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사적인 보도·논평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하는 자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1. (현행과 같음) 22. <u>“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 수,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게시된 것을 말한다.</u> 23. <u>“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란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매개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u>
<u><신설></u>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대응 및 규제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제기¹⁾되고 있음.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 추이]

구 분	텔레비전	인터넷포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샷폼	SNS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2024년	72.2%	67.7%	18.4%	11.1%	10.9%	-
2025년	81.4%	66.5%	30.0%	22.9%	8.1%	2.1%

※ 자료: 「2025 언론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12.31.

[최근 3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사 운영 유튜브 등 관련 조정사건 처리현황]

연 도	2023	2024	2025
직접신청	35	43	106
부가신청	292	223	181
합 계	327	266	287

* 직접신청: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조정대상매체로 직접 표기한 경우

* 부가신청: 본매체(방송 등)에 대해 신청하면서 해당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함께 조치를 요구한 경우

※ 자료: 「지난해 언론조정 4,026건… 언론사 유튜브 사건 전년 대비 2.5배 증가」, 언론중재위원회 보도자료, 2026.3.17.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1) 「지난해 언론조정 4,026건… 언론사 유튜브 사건 전년 대비 2.5배 증가」, 언론중재위원회 보도자료, 2026.3.17.

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 수,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게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제공자”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매개하는 자는 제외함)’로 정의하여,

온라인 동영상 기반 시사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상 피해구제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등은 현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규율근거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언론사 운영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동법이 적용되는 “언론”의 범위를 유튜브·SNS 등까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온라인정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체계가 있다는 점, 온라인정보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는 점, 유튜브·SNS 등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언론 개념의 확장과 이에 따른 언론 지원·책임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등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에는 동의하는 입장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규율 경계의 불명확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언론중재법」에 ‘언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심의 관할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율 및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언론등 범위 확대 및 정정보도청구 대상 추가 등(안 제5조 등)

개정안은 “언론등”의 범위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포함하여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에 의한 인격권 침해 시에도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도록 하고, 언론등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대상에 현행 언론등의 보도·매개뿐만 아니라 기사를 추가하고, 정정보도청구 대상에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이하 “언론등”이라 한다)는----- ----- ----- ----- ----- ----- -----

현행	개정안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⑪ (생략)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언론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게시----- ----- ----- -----.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 -----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³⁾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함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통한 조정·중재 및 정정보도청구 등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못하여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언론등”의 범위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에 “게시”를 추가하고, 정정보도청구 대상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 절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등의 피해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의 제도적 공백은 일정 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과 언론중재법상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필

4) 「국민 93.2% “유튜브 뉴스가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한 피해구제 필요”」, 언론중재위원회 보도자료, 2025.12.4.

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정의를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 대상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통한 게시자 정보 제공 청구 근거 신설 등(안 제18조 등)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 게시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분쟁조정부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정신청) ① ~ ⑥ (생략) <신설>	제18조(조정신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게재한 자를 특정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시자의 정보(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u>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청구할 수 있다. ⑧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제7항에 따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⁵⁾은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언론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려는 신청인은 중재위원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을 적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 그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

사등에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개정안과 같이 “언론등”에 포함하여 언론중재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하더라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경우 게시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정 신청 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 게시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6)에 따른 분쟁조정부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7.7. 시행)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 ③ 삭제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정보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조정 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의 앞선 사항들이 입법화되는 경우 필요할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기간을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로 제한⁷⁾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청구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사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현행법에 포섭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바, 이에 따른 조정신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통한 정보제공 청구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의 처
02)6788-5376

참 고

언론중재위 사건 처리현황(최근 5년)

※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1) 조정 (2025년 기준 / 단위 : 건)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구제	미구제		
2021	4,278	1,221	146	73(4)		894(16)	596	132	838	378		62.7
2022	3,175	949	69	34		684(8)	450	193	686	110		67.6
2023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2024	3,937	1,452	88	66		649(14)	336	38	1,028	280		72.5
2025	4,026	1,571	38	31	2	840(19)	290	72	837	209	136	69.9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times 100$

2) 매체유형별 청구현황 (2025년 기준 / 단위 : 건(%))

연도	청구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신	인터넷		기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2021	4,278(100)	322(7.5)	131(3.1)	495(11.6)	8(1.9)	216(5.0)	2,477(57.9)	609(47.7)	20(4.7)
2022	3,175(100)	234(7.4)	75(2.4)	387(12.2)	6(1.9)	149(4.7)	1,857(58.5)	450(14.2)	17(0.5)
2023	4,085(100)	388(9.5)	99(2.4)	345(8.4)	8(0.2)	218(5.3)	2,491(61.0)	498(12.2)	38(0.9)
2024	3,937(100)	287(7.3)	89(2.3)	317(8.1)	10(0.3)	176(4.5)	2,537(64.4)	473(12.0)	48(1.2)
2025	4,026(100)	208(5.2)	103(2.6)	331(8.2)	6(0.1)	242(6.0)	2,581(64.1)	449(11.2)	106(2.6)

3) 처리기간 : ("21년)18일 → ("22년)15일 → ("23년)21일 → ("24년)25일 → ("25년) 26일

4) 청구형태별 처리현황 (2025년 기준 / 단위 : 건)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계류
							구제	미구제		
정정	1,839	764	35	407	141	20	315	87	6	64
반론	690	327	15	127	56	4	110	34	1	16
추후	94	4	0	7	1	4	57	19	-	2
손배	1,403	476	21	299	92	44	355	69	2	45
계	4,026	1,571	71	840	290	72	837	209	9	127

5) 시정권고 처리현황 (2025년 기준 / 단위 : 건)

연도	시정권고건수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고발 보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	신자 보호	고등호	정신 장애인 신원 공개	북한 주민 신원 공개	한탈민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음모·안정보도	범죄 수사 정보	범죄 수사 정보	성관계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범죄 수사	총력감	격조 보도		여조사	기사형광
2021	1,291	517		101			70	1							4		29		34	156	47	29	31	39		182	51		
2022	1,239	514	19	56			21			12	52				50	20	27	14	21	108	8	16	33			209	59		
2023	1,158	270		45						54					286		27		9	208	35	1	78			126	19		
2024	942	131		58	4		1			8	47				241		7		4	226	4		17			161	33		
2025	1,049	182	27	50						1	50				2	240	19		30		239	1	16	19			135	38	